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지능정보융합학과 내규

제정 2020.08.31.

개정 2023.02.20.

개정 2024.06.27.

이 내규는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지능정보융합학과 대학원 과정(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의 학생들이 학업을 이수함에 있어서 숙지해야 할 제반사항이며, 본교 학칙에 입각하여 학과 내규로 정한 것이므로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1. 학사운영 일반

가. 대학원과정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서울대학교 규정을 따른다.

나. 대학원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 학점 이상으로 한다.

- 1) 석사과정 24학점
- 2) 박사과정 36학점
- 3) 석박통합과정 60학점
- 4) 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2. 교과목의 구성 및 내용

가. 교과목 이수 표준형태

- 1) 전공필수: M3294.000100 지능정보세미나 이수
- 2) 연구윤리필수: 학과에서 인정하는 연구윤리 정규교과목 1개 이상 이수 (2023학번 이후)
- 3) 전공선택: 전공선택 과목은 본 전공 개설교과목, 지도교수 및 학과장이 승인하는 학부과목(최대 6학점까지) 및 타전공, 타학과(부)의 대학원과정 개설교과목으로 한다. 타학과(부) 인정학점, 학부 전공과목 인정학점 한도는 교과과정 해설에 따른다.
- 4) 대학원논문연구: 석사과정 6학점, 박사과정 12학점, 석박통합과정 18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의 경우 첫 학기에는 수강할 수 없다.

나. 과정별 이수기준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연구윤리	대학원논문연구 ¹⁾	
				최대이수 학점	비고
석사	지능정보 세미나	전공개설 교과목 타전공, 타학부(과) 인정교과목	학과에서 인정하는 연구윤리 정규교과목 1강좌(2023학번 이후)	6학점	한 학기 “1강좌” 수강원칙
박사				12학점	
석박 통합				18학점	지도교수 승인 하에 한 학기 “2강좌” 가능

1) 한도초과 학점은 수료학점으로 불인정. 단, **석사과정과 석박통합과정**은 입학 후 첫 학기 및 지도교수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수강 불가함.

-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교과목은 통합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박사과정에서 다시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중복이수가 되어 박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 전공선택 교과목 : 다른 대학(원) 및 타전공, 타학부(과)에서 동종계열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 공통역량 교과목 : 공통역량 교과목의 이수학점 인정 한도는 대학원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학과 내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 경과조치: 2020학년도 학과 개편으로 인하여 소속 변경된 학생들의 기 이수한 교과목은 수료학점으로 인정한다.

3. 석사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가. 논문지도교수 선정

- 1) 석사과정의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입학 후 1개 학기 이내에 한다.
- 2) 논문지도교수 변경 후 1년 이내에 졸업할 수 없다. 단, 특수상황의 경우 학과장의 승인 하에 졸업할 수 있다.
- 3) 논문지도교수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1인의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 가) 학제적 성격의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 나) 국내·외 대학 및 기관과 공동학위수여협정을 체결한 경우
 - 다) 타 학과(부)·전공의 교원을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하는 경우
 - 라)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논문제출자격시험

- 1)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성된다.
- 2) 영어시험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EPS 성적 또는 TOEFL 성적으로 대체한다. 이때, TEPS 298점(구 TEPS 551점) 이상, 또는 상응하는 TOEFL 성적을 합격으로 한다.
- 3) 석사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중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4) 종합시험
 -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이루어진다.
 - 필답시험은 응시자가 지도교수와 학과장이 승인한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 5) 종합시험에 있어서 필답시험의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불합격된 시험은 다시 응시할 수 있다.

다. 학위논문 신청자격

- 1) 석사는 전공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24학점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영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2) 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 이수과목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라. 논문심사

- 1) 논문심사 당해 학기 중에 공개발표 형태의 구술고사와 함께 논문의 최종 심사를 실시한다.
- 2) 논문심사위원은 본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대학원 학사위원회가 선정하며, 논문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 1인을 둔다. 다만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마. 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 1) 합격점수 :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 2) 논문의 합격 :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바. 학위논문제출 허용기간

석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본부 규정에 따른다.

4. 박사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가. 논문지도교수 선정

- 1) 박사과정의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입학 후 1개 학기 이내에 한다.
- 2) 논문지도교수 변경 후 1년 이내에 졸업할 수 없다. 단, 특수상황의 경우 학과장의 승인 하에 졸업할 수 있다.
- 3) 논문지도교수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1인의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가) 학제적 성격의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나) 국내·외 대학 및 기관과 공동학위수여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 타 학과(부)·전공의 교원을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하는 경우

라)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논문제출자격시험

- 1)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성된다.
- 2) 영어시험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EPS 성적 또는 TOEFL성적으로 대체한다. 이때, new TEPS 298점 (old TEPS 551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TOEFL성적을 합격으로 한다. 또한, 입학 시 인정받은 TEPS성적 또는 TOEFL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외국인 학생의 경우 대학본부 규정에 따른다.
- 3) 종합시험
 -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3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박사 과정 수료 후 1년 이내에 통과해야 한다. 단, 수료 후 1년 이내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학과 교수회의** 승인 하에 최대 **2회**의 재시험이 가능하다.
 - 종합시험은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진다.
 - 필답시험은 응시자가 지도교수와 학과장이 승인한 3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 구술시험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박사 논문계획서(Ph.D. thesis proposal)를 지능정보융합학과의 관련 교수가 참여하는 논문계획서 심사위원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 종합시험에 있어서 필답시험의 과목별 합격점수와 구술시험의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불합격된 필답시험의 과목이나 구술시험은 다시 응시할 수 있다.

다. 학위논문심사 신청자격

서울대 학위수여규정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논문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1)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영어)에 합격한 자
- 2)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36학점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자
- 3) 학위 논문제출 허용 기한(과정 수료후 석사 4년, 박사 6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4) 전 이수과목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5) 학위과정 중 제1저자로 제출하여 채택된 논문이 2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1편 이상은 SCI(E), SSCI, AHCI 논문 또는 학과에서 정한 우수학술대회 논문이어야 한다 (심사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게재 완료된 논문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1편에 한해 게재 예정(accepted for publication)인 논문도 실적으로 인정한다).
- 6) 본부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자
- 7) 본부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자
- 8)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

라. 논문심사(논문요지 발표, 예비심사 및 최종심사)

- 1) 논문요지 발표의 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를 선택하여야 한다.
- 2) 최종심사 한 학기 전에 학위논문주제에 대한 논문 요지 발표를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2/3 찬성으로 합격을 판정한다.
- 3) 박사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 중 논문요지 발표 심사를 통과한 자는 학위논문의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4) 예비심사 및 최종심사의 논문심사위원은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대학원 학사위원회가 선정한다. 논문심사위원은 5인 이상 (교내 3인 이상, 교외 1인 이상 필수)으로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을 둔다. 다만 지도 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5) 예비심사는 학과장 또는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6) 예비심사를 통과한 당해학기에 공개발표 형태의 구술고사와 함께 논문의 최종 심사를 실시 한다.

마. 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 1) 합격점수: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
- 2) 논문의 합격: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바. 학위수여의 결정 : 박사학위 수여는 대학원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사. 학위논문제출횟수 및 허용기간

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본부 규정에 따른다.

5.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논문지도교수 선정

- 1) 논문지도교수 선정은 입학 후 1개 학기 이내에 한다.
- 2) 논문지도교수 변경 후 1년 이내에 졸업할 수 없다. 단, 특수상황의 경우 학과장의 승인 하에 졸업할 수 있다.
- 3) 논문지도교수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1인의 공동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가) 학제적 성격의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나) 국내·외 대학 및 기관과 공동학위수여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 타 학과(부)·전공의 교원을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하는 경우

라)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논문제출자격시험

- 1)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성된다.
- 2) 영어시험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TEPS 성적 또는 TOEFL성적으로 대체한다. 이때, new TEPS 298점 (old TEPS 551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TOEFL성적을 합격으로 한다. 또한, 입학 시 인정받은 TEPS성적 또는 TOEFL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외국인 학생의 경우 대학본부 규정에 따른다.
- 3) 종합시험
 - 종합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박사과정 수료 후 1년 이내에 통과해야 한다. 단, 수료 후 1년 이내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학과 교수회의** 승인 하에 최대 **2회**의 재시험이 가능하다.
 - 종합시험은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으로 이루어진다.
 - 필답시험은 응시자가 지도교수와 학과장이 승인한 3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 구술시험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박사 논문계획서(Ph.D. thesis proposal)를 지능정보융합학과의 관련 교수가 참여하는 논문계획서 심사위원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 종합시험에 있어서 필답시험의 과목별 합격점수와 구술시험의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불합격된 필답시험의 과목이나 구술시험은 다시 응시할 수 있다.

다. 학위논문심사 신청자격

서울대 학위수여규정에 의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논문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1)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영어)에 합격한 자
- 2)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을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자
- 3) 학위 논문제출 허용 기한(과정 수료후 석사 4년, 박사 6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4) 전 이수과목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5) 학위과정 중 제1저자로 제출하여 채택된 논문이 2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1편 이상은 SCI(E), SSCI, AHCI 논문 또는 학과에서 정한 우수학술대회 논문이어야 한다. (심사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게재 완료된 논문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1편에 한해 게재 예정 (accepted for publication)인 논문도 실적으로 인정한다).
- 6) 본부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자
- 7) 본부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받은 자
- 8) 대학원 과정 수료자로서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

라. 논문심사(논문요지 발표, 예비심사 및 최종심사)

- 1) 논문요지 발표의 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수를 선택하여야 한다.
- 2) 최종심사 한 학기 전에 학위논문주제에 대한 논문 요지 발표를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2/3 찬성으로 합격을 판정한다.
- 3) 박사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 중 논문요지 발표 심사를 통과한 자는 학위논문의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4) 예비심사 및 최종심사의 논문심사위원은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교외의 전문가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대학원 학사위원회가 선정한다. 논문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을 둔다. 다만 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5) 예비심사는 학과장 또는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6) 예비심사를 통과한 당해학기에 공개발표 형태의 구술고사와 함께 논문의 최종 심사를 실시한다.

마. 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 1) 합격점수: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
- 2) 논문의 합격: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바. 학위수여의 결정 : 박사학위 수여는 운영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사. 석사학위취득: 박사학위를 취득할 자격에 미달되거나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석사학위 수여의 요건을 만족하면,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 **석박통합과정 포기원 제출:** 중도포기 학생은 스스로 통합과정의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으로서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 내에 석사·박사통합과정 포기원을 제출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등의 석사학위 자격을 충족하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 **박사학위 포기원 제출:** 통합과정 수료 후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 내에 박사학위 포기원을 제출하고 석사학위 자격을 충족하면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아. 학위논문제출횟수 및 허용기간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논문 제출기한은 본부 규정에 따른다.

자. 기타 기술되지 않은 사항들은 박사과정 운영내규에 준하여 따른다.

부 칙 (2020.08.30.)

- ① 이 내규는 2020.09.0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내규는 2020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20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은 학과 신설 전 소속 전공의 내규를 따를 수 있다.

부 칙 (2023.02.20.)

- ① 이 내규는 2023.02.20.부터 시행한다.
- ② 제2조 가항 연구윤리 필수 이수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입학한 학생에게 적용하며, 2022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은 이전 내규(2020.08.30.)를 따른다.

부 칙 (2024.06.27.)

- ① 이 내규는 2024.06.27.자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조 교과목 구성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2024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24학년도 2학기 이전 입학생이라도 따를 수 있다.
- ③ (경과조치) 제3조 나항, 제4조 나항, 제5조 나항 논문제출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시행일 이전 입학생이라도 따를 수 있다.